

6

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보고

장애인자립지원과장 : 경자인 ☎2133-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: 운영대 ☎7472 담당 : 안호준 ☎7475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- 사업기간 : 2022. 1 ~ 12월
- 지원대상 : 만6~65세 미만 장애인, 만65세 이상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
- 지원내용 : 가사,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
- 지원방법 :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(전자바우처 제공)

□ 예비비 사용금액 및 사유

- 관련근거
 -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, 서울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(예비비의 사용)
- 사용금액 : 3,125,383천원
 - 예산과목 : 장애인자립기반 구축,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, 장애인활동지원사업-활동지원급여, 자치단체경상보조
- 사 유 : 겨울철 코로나 19 재유행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금이 증액 변경되어, 이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 확보

□ 추진결과

-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계획 방침 수립 : '22.12.16
- 사업비 지출 : '22.12.20